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은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308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5.

발 의 자:이은주·장혜영·강은미

심상정 · 강민정 · 배진교

류호정・양정숙・김의겸

조정훈 · 용혜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국회의원 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의회 의석에 투표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,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등의 움직임은 부족한 상황임.

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, 시민들이 정치를 접하는 통로인 점을 고려할 때,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임.

이에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,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, 기초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, 지방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비례대표지방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(안 제22조제5항, 제23조제3항)
- 나.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확대(안 제23 조제2항)
- 다.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(안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)
- 라. 자치구·시·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·도에서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 에 설치하도록 함(안 제24조의5).
- 마. 기초 및 광역의원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 3:1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명시(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)
- 바.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 있어 중대선거구제 강화(안 제26조제2 항 및 제4항)
- 사. 시·도의원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, 자치구·시·군의 회선거 의석 배분 시 하나의 정당에 의석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 그 정당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해 당하는 수의 의석만을 배분하도록 함(안 제190조의2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전단 중 "100分의 10"을 "100분의 30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0조의2제4항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시·도의원선거에서 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의원정수에 추가의석수를 더한수를 해당 시·도의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"7인"을 "9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100분의 10"을 "100분의 30"으로 한다.

제24조의3을 제24조의5로 하고,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3(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) ① 시·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(이하 "시·도의원지역구"라 한다)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 에 따른 시·도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시·도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시·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- ②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,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.
- ③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4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·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- ⑥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①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·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⑧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 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시·도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⑨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(이하 이 조에서 "지원 조직"이라 한다)을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,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격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①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원에 따른 위원 선정과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,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료 요청 및 회의록 작성·공개,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4조제5항·제8항·제9항·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"는 "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"로 본다.
- ① 그 밖에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24조의4(시·도의원지역구 확정) ① 국회는 시·도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8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 -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의3제8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회에 회부된 선거구획정안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 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회의원지역구"는 "시·도 의원지역구"로, "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"는 "시·도의원선거구획정

위원회"로, "제25조제1항의 기준"은 "제26조제1항의 기준"으로 본다. 제24조의5(종전의 제24조의3)제1항 중 "시·도"를 "시·도선거관리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도지사가"를 "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"을 "지방의회의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시·도지사"를 "시·도 의회의 의장"으로 한다.

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6(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 확정) ① 시·도의회는 자치구·시·군 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3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의회의 의장은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시·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여야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(이하 "선거구조례안"이라 한다)을 제안하여야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, 선거구획정안이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

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시·도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⑤ 시·도의회의 의장은 선거구조례안 또는 선거구조례안이 포함된 조례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조례안 또 는 선거구조례안이 포함된 조례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自治區·市·郡"을 "인구비례 3:1의 범위에서 자치구·시·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획정하되"를 "인구비례 3:1의 범위에서 획정하되"로, "2인 이상 4인 이하"를 "3인 이상 5인 이하"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획정하여야 하며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"를 "획정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57조제1항제2호 단서 중 "제189조 및 제190조의2"를 "제189조, 제19 0조의2 및 제190조의3"으로 한다.

제190조의2를 제190조의3으로 하고, 제1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0조의2(시·도의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시·도의회의원의석의 배분 과 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 ①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시·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(이하 이 조에서 "의석할당정당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시·도의원 의석을 배분한다.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.

- ② 시·도의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(지역구시·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하여 산출한다)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(整數)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,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.
- ③ 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석은 제2항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시·도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 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한다.
- ④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시·도의원선거에서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(이하 이 조에서 "추가의석"이라 한다)을 획득 한 경우 해당 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한다.
-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 198조(천재·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)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

나는 수에 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(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를 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. 다만, 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시·도의원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(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한다.

⑥ 제187조(대통령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제4항, 제189조(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제4항·제5항 및 제 7항은 비례대표시·도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중앙선거관리위원회"는 "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"로, "비례대표 국회의원"은 "비례대표시·도의원"으로 본다.

제190조의3(종전의 제190조의2)의 제목 중 "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"을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당선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"를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"를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"를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"를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"로, "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(1 미만의 단수는 1

로 본다)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"를 "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의석의 배분 및 당선인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0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"로 하며, 같은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"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"을 각각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"으로 한다.

이 경우 "비례대표시·도의원"은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"으로 본다.

제194조제2항 중 "제189조 및 제190조의2(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"를 "제189조(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, 제190조의2(시·도의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시·도의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 및 제190조의3(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"으로 한다.

제197조제7항 중 "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90조의2"를 "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90조의2 또는 제190조의3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 회의 설치·운영을 위한 준비행위)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·도선거 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각각 제24조의3에 따른 시·도의원선 거구획정위원회, 제24조의5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 회를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
- 제3조(비례대표시·도의원정수 및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5항 전단 및 제2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관한 특례) 제24조의 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 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·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 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제24조의3에 따른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와 제24조의5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한다.
- 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 중 "「공직선거법」 제22조제4항"을 "「공직선거법」

제22조제5항"으로, "100분의 10"을 "100분의 30"으로 한다.

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2항 전단 중 "100분의 20"을 "100분의 30"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시·도의회의 의원정수) ①	제22조(시·도의회의 의원정수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
	정에도 불구하고 제190조의2제
	4항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지
	역구시·도의원선거에서 추가의
	석을 획득한 경우에는 같은 규
	정에 따라 산정된 의원정수에
	추가의석수를 더한 수를 해당
	<u>시·도의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로</u>
	한다.
④ 比例代表市·道議員定數는	<u> </u>
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	
하여 算定된 地域區市·道議員	
定數의 <u>100分의 10</u> 으로 한다.	<u>100분의 30</u>
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. <u>다</u>	
만, 算定된 比例代表市·道議員	<u>서 삭제></u>
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	
<u>으로 한다.</u>	
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	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
정수) ① (생 략)	정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최소정	2
수는 <u>7인</u> 으로 한다.	<u>9인</u>

③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. 이 경우단수는 1로 본다.

<신 설>

③
100분의 30

제24조의3(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 원회) ① 시·도의회의원지역선 거구(이하 "시·도의원지역구"라 한다)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시·도의원선 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 당 시·도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시·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 하는 날까지 시·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- ②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,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.
- ③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 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

심사하는 특별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4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·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
- ⑤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·도의원선거 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- ⑥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은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①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·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⑧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

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시·도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⑨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(이하 이 조에서 "지원 조직"이라 한다)을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,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있다.

①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원에 따른 위원 선정과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, 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료 요청 및 회의록 작성·공개, 시·

<신 설>

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의 직무 상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4조제5항·제8항·제9항· 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"는 "시·도의원선거구획 정위원회"로 본다.

① 그 밖에 시·도의원선거구획 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24조의4(시·도의원지역구 확정)

- ① 국회는 시·도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8개월까지 확정하여 야 한다.
-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의3제8항 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에 회부된 선거구획 정안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 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회의원지 역구"는 "시·도의원지역구"로, "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"는 "시·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"는

제24조의3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 구획정위원회) ① 자치구·시·군 의원지역선거구(이하 "자치구· 시·군의원지역구"라 한다)의 공 정한 획정을 위하여 <u>시·도</u>에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 원회를 둔다.

- ②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와 시·도의회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<u>시·도지사가</u>위촉하여야 하다.
-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없다.
- ④ (생 략)
- ⑤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 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을 마련하고, 그 이유나 그 밖

<u>로, "제25조제1항의 기준"은</u>
"제26조제1항의 기준"으로 본
<u>다.</u>
제24조의5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
구획정위원회) ①
<u>시·도선</u>
거관리위원회
②
시·도선거관
리위원회위원장이
③ 지방의회의원
④ (현행과 같음)
⑤

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 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 른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의 선 거일 전 6개월까지 <u>시·도지사</u>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~ ⑧ (생 략) <신 설>

-----시·도의회 의 의장----.. ⑥ ~ ⑧ (현행과 같음) 제24조의6(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 구 확정) ① 시·도의회는 자치 구·시·군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3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 ② 시·도의회의 의장은 제24조 의5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 구획정안을 시·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 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 라 한다)에 회부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 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자치구·시· 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 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 례안(이하 "선거구조례안"이라 한다)을 제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자치구·시·군의 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

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 되, 선거구획정안이 제26조제2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자치구·시·군의 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 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 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 정안을 마련하여 시·도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 한다.

⑤ 시·도의회의 의장은 선거구 조례안 또는 선거구조례안이 포함된 조례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 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 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선거구조례안 또는 선거 第26條(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一第 定) ① 市·道議會議員地域選舉 區(이하 "市·道議員地域區"라 한다)는 人口·行政區域·地勢·交 通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自治區·市·郡(하나의 自治區· 市・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 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 地域區를 말하며,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 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) 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劃定하되. 하나의 市·道議 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 市·道議員定數는 1명으로 하며, 그 市·道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 한 다.

②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 의 조건을 고려하여 <u>획정하되</u>,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 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·시·

구조례안이 포함된 조례안을
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.
第26條(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
定) ①
인구비례 3:1의 범위에서 자치
<u>구·시·군</u>
②
인구비례
3:1의 범위에서 획정하되

군의	원정수님	= 29	인 이건	상 49	인 이
	하며,				
원지	역구의	명칭	·구역	및	의원
정수님	는 시·5	E 조 려]로 정	항한다	₹.

- ③ (생략)
- ④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 내에 서 <u>획정하여야 하며, 하나의</u>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 친구·시·군의원을 4인 이상 선 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 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.
- 第57條(寄託金의 반환 등) ① 관 章
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.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 - 1. (생략)
 - 2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. 다만, 제189

<u>3인 이상 5인 이</u>
<u></u> 5
③ (현행과 같음)
4
<u>획정하여야 한다</u> .
第57條(寄託金의 반환 등) ①
カリス (可止並一 でも 6) (1)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

·제189

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 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 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 금은 제외한다.

② ~ ⑤ (생 략) <신 설>

<u>조,</u>	제190)조의2	및	제190)조의 <u>3</u> 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90조의2(시·도의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시·도의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 지) ①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에서 유 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을 득표한 각 정당(이하 이 조 에서 "의석할당정당"이라 한다) 에 대하여 해당 의석할당정당 이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시·도의 원 의석을 배분한다.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 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.

② 시·도의회의원의석은 각 의 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 정수(지역구시·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

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 자의 수를 공제하여 산출한다) 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 (整數)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 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, 그 수 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 이의 추첨에 의한다.

- ③ 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석은 제2항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당정당이 지역구시·도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한다.
- ④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시· 도의원선거에서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 (이하 이 조에서 "추가의석"이 라 한다)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 유한다.
-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(천재·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)의 규정에 의

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 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석정 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(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를 비 례대표시·도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비례대표시·도의원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 정한다. 다만, 비례대표시·도의 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 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 마다 비례대표시·도의원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(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의 의 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. ⑥ 제187조(대통령당선인의 결 정·공고·통지)제4항, 제189조(비 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제4 항·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 시·도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 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중앙선

제190조의2(비례대표지방의회의 저 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 (이하 이 조에서 "의석할당정 당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 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 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 하되,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 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 다.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 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 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

선거관리위원회"로, "비례대표
국회의원"은 "비례대표시·도의
원"으로 본다.
세190조의3(<u>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</u>
<u>의원당선인</u> 의 결정·공고·통지)
① <u>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</u>
<u>거</u>
·

거관리위원회"는 "관할선거구

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.

②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 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 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(整 數)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.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 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(整數) 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 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 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. 다 만,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 하는 수의 정수(整數)에 해당하 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(整數)의 의석 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 분한다.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

··
② <u>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</u>
<u> 거</u>

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에 있어서 제198조(천재·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)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 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(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 다)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. <후단 신 설> 다만,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 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 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 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 수(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

	_
	· —
3	-
<u>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회</u>	븨
<u> 원선거</u>	-
	-
발생한 🧵	경
우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의	의
석의 배분 및 당선인의 결정여	케
관하여는 제190조의2제5항을 중	<u> 주</u>
용한다. 이 경우 "비례대표시·!	三
의원"은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급	간
의원"으로 본다. <단서 삭제>	

- 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.
- ④ 제187조(대통령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제4항, 제189조제4항·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중앙선거관리위원회"는 "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"로, "비례대표국회의원"은 "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"으로 본다.
- 第194條(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 第 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) ①(생 략)
 - ② 제189조 및 제190조의2(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결정·공고·통지)의 규정에 따른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위법을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나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再選擧를 실시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議席을 再配分하고 다시 當選人을 決定

4
<u>비례대</u> 표자치구·시·군의원
,
비례대표자
<u>치구·시·군의원</u>
第194條(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
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
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)
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89조(비례대표국회의원
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·
공고·통지), 제190조의2(시·도의
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시·도
의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
의 결정·공고·통지) 및 제190조
의3(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
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
0001 2002 0/1/
·

하여야 한다.

- ③ ④ (생 략)
- 제197조(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) ① ~ ⑥ (생 략)
 -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 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 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(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를 의 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90 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, 그 재배분에서 제 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.
 - ⑧・⑨ (생략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97조(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
재선거) ① ~ ⑥ (현행과 같
승)
7
제189조제
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90조의2
또는 제190조의3
8·9 (현행과 같음)